

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

AI,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%까지 삭감하는 등, 5월 1일부터 시행

출처 : 농식품부 (2018. 4.25)

- ◎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을 '17.10.31일자로 개정·공포하였으며,
- 그 후속 조치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'18.5.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

<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(참고 1)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개정 ('17.10.31 공포, '18.5.1 시행)

-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의 근거 마련
-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손실 평가액 지급 및 감액 근거 마련
-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(장관 → 장관 +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)
-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
-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

주요 개정 내용

- ◎ (살처분 보상금) AI·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%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,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%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한다(참고 2).
-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,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% 감액 받게 된다.

- ◎ (사육제한 명령)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*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.
 - *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(18년 기준 375개 읍 면동)
-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
- ◎ (일시 이동중지 명령)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“일시 이동 중지 명령”*을 시·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.
 - *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, 가축 및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하는 것
- 시·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“일시 이동 중지 명령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.
- ◎ (방역관리 책임자) 10만수 이상의 닭·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“방역관리책임자”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, 그 세부 자격 기준*을 마련하였다.
 - *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
- “방역관리책임자”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,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.
- ◎ (자율 방역 강화)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울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,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이를 통해,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기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◎ 농식품부는 이번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·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
 -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.

참고1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 주요 내용 ('18.5.1. 시행예정)

◎ 주요 내용

법	시행령	시행규칙	기준	개정사항
○증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 교육 이수 의무화	—	—	○증점방역관리지구내 농가는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 만 있음	○증점방역관리지구내 농가는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함
○증점방역관리지구 내 기축사육제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함	○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	○사육제한 명령의 절차, 대상, 방법 등을 규정	(신설)	○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시기에 증점방역관리지구 내 기축 사육제한 근거 마련
○방역관리 책임자 제도 도입	—	○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 규모, 방역관리 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 내용 규정	(신설)	○10만수 이상의 대규모 닭, 오리 사육농가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 책임자의 선임을 의무화
○대학·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신고대상 기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	—	—	○가축의 소유자, 신고 대상 기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, 농장을 방문한 동물 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기축 발견시 신고해야 함	○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·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신고대상 기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 함
○시설출입차량 범위 확대		○축산차량등록대상 세부 범위 규정	○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 품·사료·조사료·가축·분뇨·퇴비·왕겨·쌀겨·돌발·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·예방접종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수리 목적의 차량이 등록대상에 해당	○가축질병 전파 위험 이 높은 계란난작, 가금부산물, 가금출하·상하차 등 인력수송, 축산농가 보유 화물 차량을 등록대상으로 확대·단, 축산농가를 출입하지 않는 일운 반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
○시설출입차량임을 차량 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지 부착 의무화	—	○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부착 하는 방법 규정	○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는 있었으나,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의무는 없음	○시설출입차량임을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부착 의무화
○일시이동증지명령 발령 권한을 농식품부장관 외에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	—	—	○일시 이동증지 명령은 능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할 수 있음	○일시 이동증지 명령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함

법	시행령	시행규칙	기준	개정사항
	○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계열회사업자명 공개	-	○ 가축전염병명, 발생 장소 및 발생일시, 가축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공개	○ 계약사육농가에서 발생시 축산계열회사업자명도 공개하도록 함
	○ 실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신설 강화 현실화 및 감경기준 추가		○ 실처분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의 세부사항 규정	○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20% 감경, 신고자연시 최대 40% 감액, 이동제한 위반 시 5→20%감액 강화, 일제 입식·출하 미준수 시 20%감액 신설 등
	○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		○ 가축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	○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축소금지, 축종·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, 도축 출하용 신란계·증계의 노계 입식금지,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
	○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항에 폐사율 및 신란을 추가		○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사육현황, 의사환족 발생여부,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음	○ 보고사항에 폐사율 및 신란을 추가함

참고2 실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변경('18.5.1. 적용)

* 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: [] / 감액 기준 강화: []

지급 및 감액 기준	감액·경감 기준	
	현행	개선(안)

◎ 발생농장에 대한 지급 기준

인센티브	구제역·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	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노력 인정 시	(신설)	20% 감액 경감 (신설) (신설)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자급 기준		감액 · 경감 기준		
		현행	개선(안)	
◎ 감액 기준				
패널티	최근 2년(→5년)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	2회 발생	20% 감액	-
		3회 발생	50% 감액	(단, 재발기간이 5년으로 상향)
		4회 발생	80% 감액	
방역 기준	사육제한	사육제한 명령 위반시	(신설)	100% 감액
	축산법 관련	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	10% 감액	30% 감액
	축산 계열화사업 자 의무사항	계약사육농가 방역교육 마실시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 마실시 시군에 방역 교육·점검 결과 미통지	5% 감액 5% 감액 5% 감액	10% 감액 10% 감액 10% 감액
	시설 차량	축사별 전실(닭·오리) 미설치 관리사, 축사 등 신발소독조 미설치	(신설) (신설)	20% 감액 5% 감액
방역 활동	축사별 정화 갈아신기 등 방역기준 미준수	(신설)	5% 감액	
	육계 육용오리 일제입식·출하 및 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	(신설)	20% 감액	
의심축 신고	의심축 미신고		60% 감액	-
	[닭·칠면조] 신고를 지연한 경우 -당일 폐사율이 최근 20일간 평균 폐사율의 두배 이상인 날 -다음의 폐사율 기준 초과한 날		1일 2일 3일	(신설) (신설) (신설)
	폐사기준		4일 이상	(신설)
	①육계: 1일 1,000마리당 3.5마리 이상 ②산란계: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 량 5% 이상 저하 ③육용종계: 1일 1,000마리당 2마리 이상 ④산란종계: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 산량 5% 이상 저하 ⑤칠면조: 1일 1,000마리당 2마리 이상			40% 감액
	[그외 축종] 외관상 증상이 최초 나타난 날 이후 신고한 경우			
	실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		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72시간 이상	10% 감액 30% 감액 60% 감액
	역학 조사 거부·방해·회피,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·은폐 이동제한 명령 위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·매몰·소독 명령 위반 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		5% 감액 5% 감액 5% 감액 5% 감액 5% 감액	20% 감액 20% 감액 20% 감액 20% 감액 20% 감액
발생 시 조치				